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2년 7월 18일 회부
- 상정일자: 제2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가. 제안이유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통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 추진하고 지역 외식비 및 소비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사항(안 제8조)
-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남섭)

○ 본 조례안은

평창군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운영 점검,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포상 규정 등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을,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 점검, 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과 포상 규정에 대해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창군 시장경제 활성화 및 지역 소비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부.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평창군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평가 등을 통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분기마다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도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